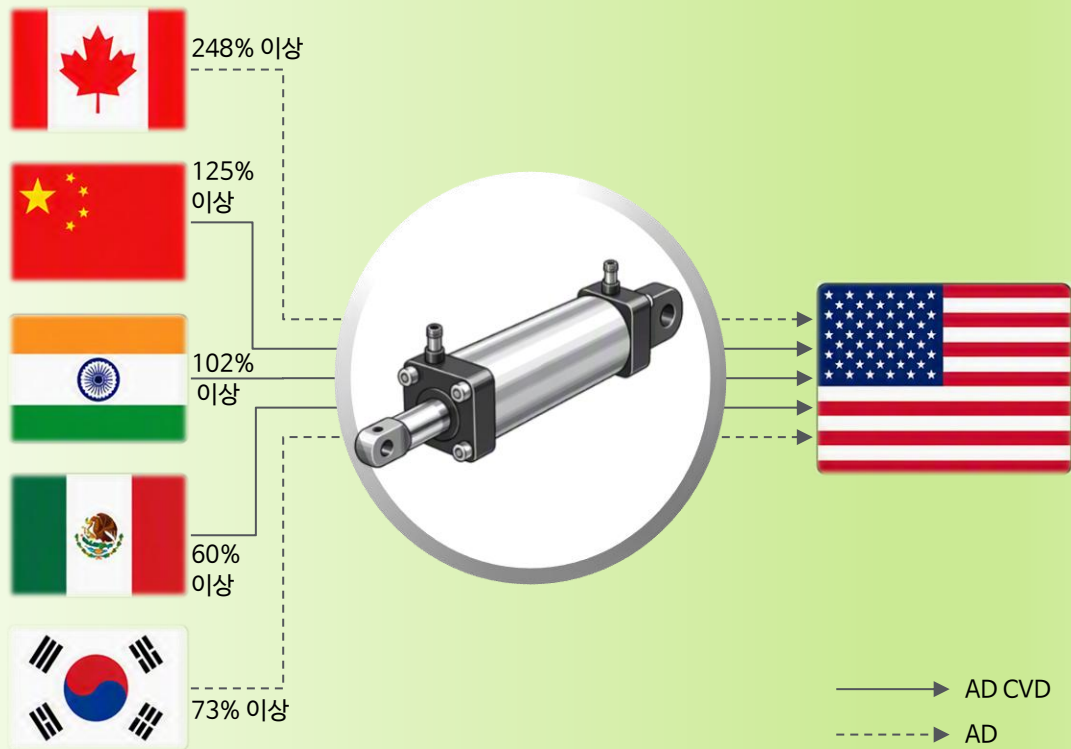




AD: 반덤핑조사, anti-dumping | CVD: 상계관세조사, countervailing duty

한국산 미국향 선형유압실린더 반덤핑

한국 제조사들의 대응방안 (사건번호 A-580-923)

2026년 8월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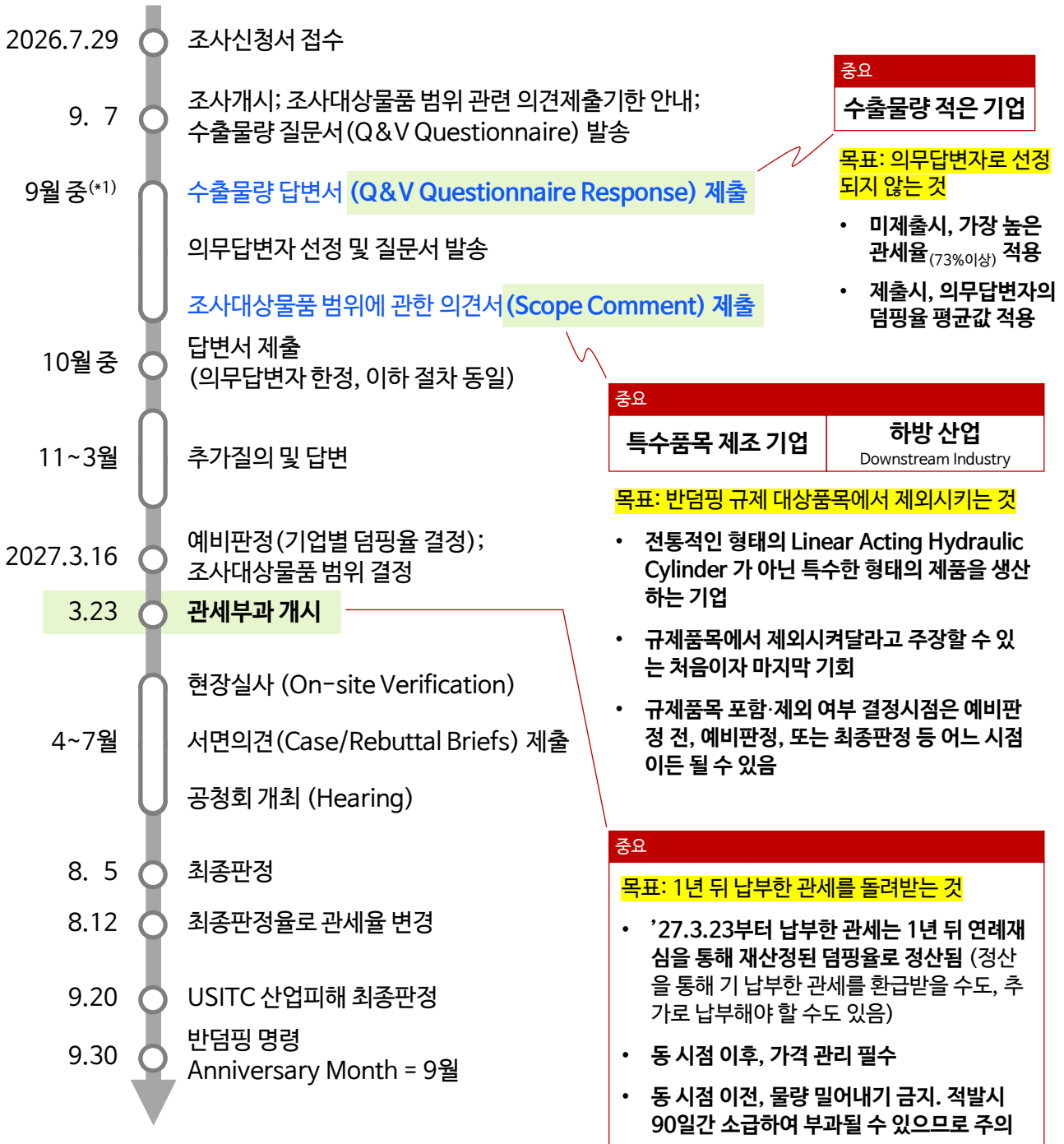
반덤핑 원심조사 예상일정	3
조사대상 물품	4-5
예치-정산 구조	6
의무답변자 선정 여부에 따른 차이	7
대한상의 수입규제 대응지원	8-9
KOTRA 무역장벽119	10



반덤핑 원심조사 예상일정

'26.9.7 미 상무부 조사개시를 시작으로 1년여에 걸친 조사 진행

초기(9월) 대응의 성공 여부가 전체 결과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각별한 주의와 관심 필요



註, 상기 일정은 예상일이며, 조사가 진행되면서 변동 가능함에 주의

(*1) Q&V Questionnaire와 Scope Comment 제출기한은 9/7 조사개시 공고문에 기재될 것으로 예상됨

조사대상 물품

미국 생산자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특수한 품목을 제시하고
미국 수요자들의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최종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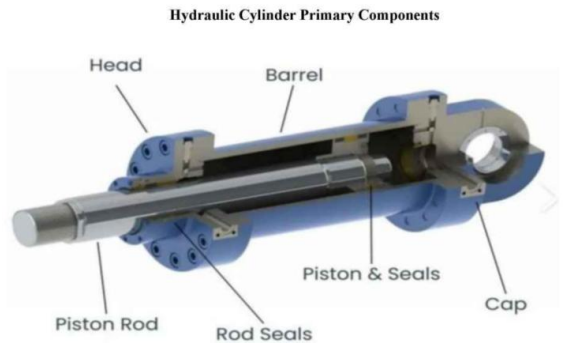
미국 생산자들이 제시한 조사대상물품의 문장, 단어, 문구
하나하나를 모두 수정요구 할 수 있으므로,
각 기업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의견 제출 권고

“ 현재 조사대상물품의 문구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굴삭기 등 84류 제품에 완전히 장착된 유압실린더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됨. 특히, 굴삭기 중 유압실린더 **함량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

따라서 반드시 다음의 문구 삽입 요구 필요:

(예시1) The scope does not include hydraulic cylinders that are fully assembled into and imported as part of a finished machine or finished equipment. Only hydraulic cylinders imported separately as replacement parts or service parts are covered by the scope.

(예시2) Excluded from the scope are hydraulic cylinders that are imported as part of, attached to, mounted on, or installed in complete equipment or parts of equipment. The scope covers only standalone hydraulic cylinders and replacement hydraulic cylinders imported separately from such equipment.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는 것

- 부품(내경 1인치 이상 Barrel, 가공된 길이 4인치 이상 Piston Rod, 및 이들의 조립품) 포함
- 실린더 디자인 무관
- 조사대상물품(유압실린더 완제품 및 부품)과 함께 수입되거나, 조사대상물품에 장착되었거나, 조사대상물품과 함께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부품' 포함
- 84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로 수입되는 물품에 장착되었거나, 이들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유압실린더 완제품' 포함
-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에서 생산한 유압실린더 부품을 제3국에서 조립하거나, 유압실린더를 제3국에서 84류 제품에 부착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 포함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

- 내경 1인치(25.4mm) 미만인 제품은 조사대상이 아님
- 수축길이 4인치(102.1mm) 미만인 제품은 조사대상이 아님
- 공압식(pneumatic) 실린더 제품은 조사대상이 아님



(*) 함량가치: 완제품 판매가격 중 유압실린더 부품이 차지하는 가치

반덤핑 조사신청서('26.7.29)상 조사대상물품의 정의

The scope of these investigations covers certain **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 (also known as hydraulic power engines) and certain **barrel** and **piston rod** components and **assemblies** of 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 Covered 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 have barrels made of steel, a bore size (inner diameter) of 25.4 mm (one inch) or more, and a return (retracted) length of 102.1 mm (four inches) or more. For purposes of this scope, the return (retracted) length is the overall end-to-end measurement of the hydraulic cylinder unit when in the retracted position. The scope covers all such 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 meeting the physical description abov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linear hydraulic cylinder designs: tie-rod, welded body, telescopic, plunger, rodless, differential, position sensi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 displacement, ram type, piggy-back, double rod, rod-fed, and spring return 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 All covered cylinders are hydraulically activated. The incorporation of a spring into the design of a hydraulic cylinder otherwise meeting the description above does not exclude a product from the scope.

The scope also covers (1) steel barrel components, (2) steel piston rod components, and (3) any component of a linear hydraulic cylinder that is attached to, assembled with or shipped with a covered steel barrel or a covered piston rod.

Covered barrel components include processed welded or seamless steel tubes four inches or more in length with an inner diameter of one inch (25.4 mm) or more, that have had their inner diameter precision machined (such as through honing or skiving and burnishing), and have otherwise been processed to the point of having as their sole or predominant use a barrel for an in-scope hydraulic cylinder. Such processing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cutting-to-length, end-finishing (e.g., machine-threading, chamfering, etc.), port drilling, and the addition of weldments, or any combination thereof.

Covered piston rods are solid or hollow bars or tubes that have been hard chrome plated or chrome coated, cut to length, and machined to be a piston rod.

Included in the scope are any **attachments, parts, or components** that are **imported with, attached to, or invoiced with** a linear hydraulic cylinder or covered compon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ylinder mounting parts (e.g., flanges, trunnions, devises, lugs, etc.), connectors attached to pistons or piston rods, pistons, or hydraulic tubing or hydraulic lines (regardless of material) such as for connections to a hydraulic pump.

Also included in the scope are any hydraulic cylinders meeting the physical description above attached to or imported with any equipment or parts of equipment classified in **Chapter 84**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When a **hydraulic cylinder is attached to or imported with** any equipment or parts of equipment classified in Chapter 84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only the hydraulic cylinder** is covered by the scope.

Subject merchandise also includes hydraulic cylinders, components, and subcomponents that undergo assembly or further working in a third country in any manner that would not otherwise remove the merchandise from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if performed in the country of manufacture of the in-scope hydraulic cylinder. Subject merchandise also includes hydraulic cylinders, components, and subassemblies that are attached to any equipment or parts of equipment classified in Chapter 84, as discussed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paragraph, if such attachment occurs in a third country.

Excluded from the scope are pneumatic power engines and mo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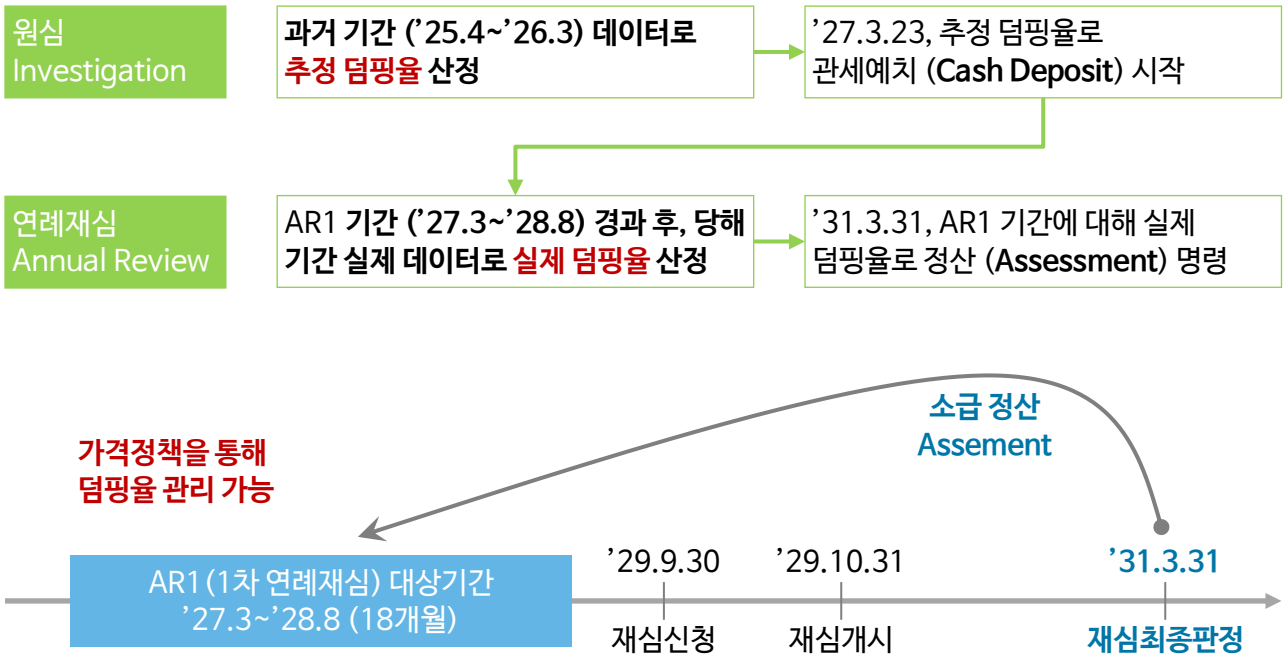
Also excluded from the scope are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at are covered by preexisting antidumping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orders. However, to the extent such AD or CVD orders are revoked, the hydraulic cylinders would be subject merchandise.

All products that meet the written physical description are withi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unless specifically excluded or covered by the scope of an existing order.

The products subject to these investigations are currently classified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under statistic reporting numbers **8412.21.0015, 8412.21.0030, 8412.21.0045, 8412.21.0060, 8412.21.0075**, and **8412.90.9005**. The HTSUS subheadings above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only.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se investigations is dispositive.

예치-정산 구조

미국의 반덤핑관세는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가 최종금액이 아니라, 매년 10월 말 개시되는 연례재심을 통해 과거 1년 단위(1차재심만 18개월)로 확정(정산)하는 구조



재심신청

- 한국 수출자와 미국 생산자가 한국 기업에 대해 모두 (개별 기업을 지목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신청한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한 연례재심이 개시됨
 - 재심 신청자가 너무 많은 경우, 의무답변자 2-3개사만 의무답변자로 선정. 미선정된 신청자는 의무답변자의 평균율 적용
 - 둘 모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 예치율로 정산(auto-liquidation)
- 한국 수출자가 자신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미국 생산자는 당해 기업에 대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한국 수출자는 재심개시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재심최종판정

- 최종판정율로 AR1 기간에 예치한 관세를 정산함
 - (예시) 5%로 예치하였으나 AR1 최종판정율이 3%로 결정되었다면, 차액인 2%만큼을 환급 받고 과다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받게 됨
 - 반대로 추가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가능
- 예비판정은 '29.9.30 에 이루어지나, 재산정 될 덤프율의 예측치(Estimate)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실제로 이 율로 정산되는 것은 아님

현장실사

- 법적으로는 현장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 실무적으로는 1차재심에서 현장실사를 수행한 사례는 거의 없음

재심 대상기간
 AR1: '27.3.23~'28.8.31 (18개월)
 AR2: '28.9. 1~'29.8.31 (12개월)
 AR3: '29.9. 1~'30.8.31 (12개월)
 ...

의무답변자 선정 여부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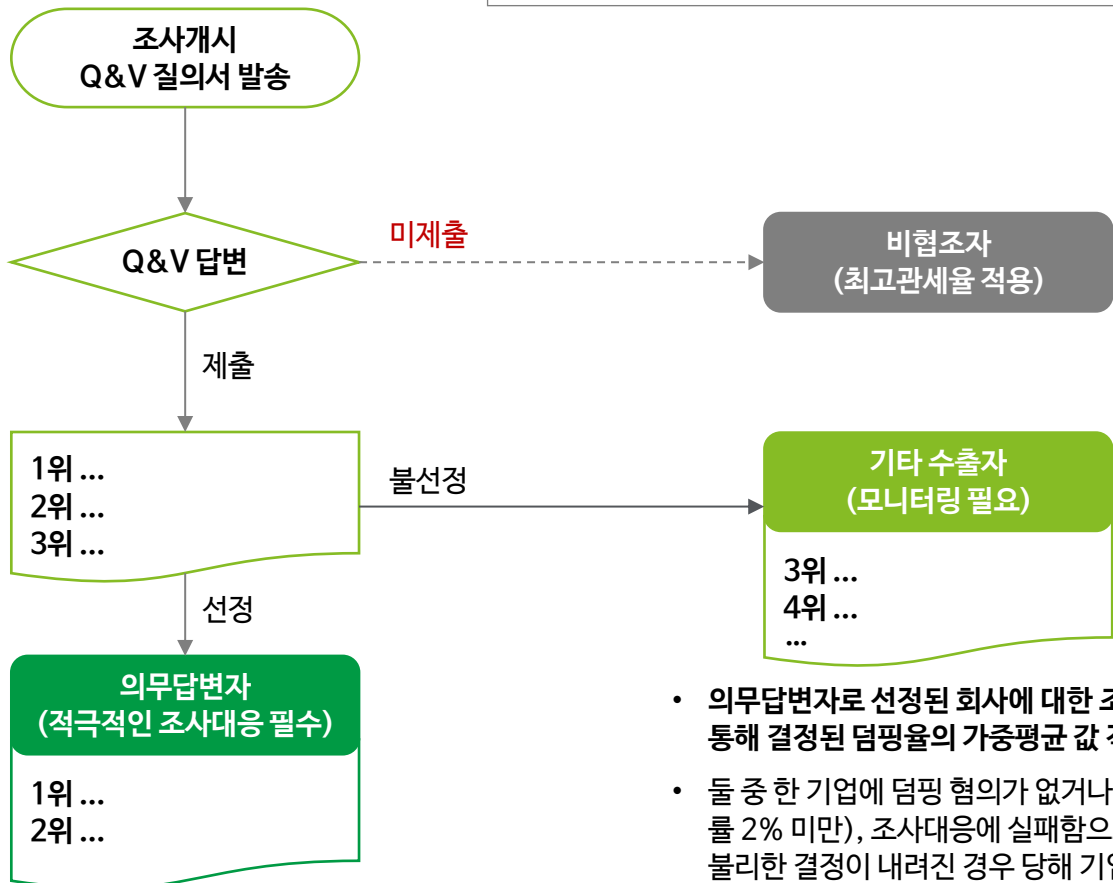
미 상무부는 관행적으로 수출물량 상위 2~3개 업체를 의무답변자로 선정

금번 사건과 같이 조사신청서상 열거된 기업들 중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거나 조사대상물품 생산자가 누락된 경우, 또는 조사대상물품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Q&V Questionnaire를 발송함으로써 한국 수출기업들의 **‘성실한 조사참여 의도’**와 **‘수출물량’** 파악

**조사신청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Q&V 답변서는 필수 제출**

조사신청서상 한국 수출자 명단 (14개사)

DY파워	삼천리기계	태일테크
SH팩	밀텍	헤인
신명유압	태성공업	그린기계
케이시시정공	글로벌엔지니어링	조흥베어링자동화
안성공업	KD파인켄	



- 의무답변자로 선정된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결정된 덤핑율의 가중평균 값 적용
- 둘 중 한 기업에 덤핑 혐의가 없거나(덤핑률 2% 미만), 조사대응에 실패함으로써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 기업은 가중평균에서 제외
- 향후 연례재심에서 의무답변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사진행상황 모니터링과 가격관리 필수

- 미국 변호사 고용 필수, 국내 회계법인 고용 권고
- 165쪽 분량 질문서 항목마다 완전한 답변 제출 필요
- 제조원가, 내수판매, 미국법인 각 1주일씩 현장실사

중소·중견기업/협·단체

2026년 수입규제 및 산업피해 대응 컨설팅 신청 접수

국제무역 활동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협·단체를 대상으로,
각국의 무역규제 대응 지원



중소·중견기업/협·단체 수입규제 및 산업피해 대응 컨설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 내용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협·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주요 통상 이슈 대응,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업기간	2026년 3 ~ 12월
지원대상	국제무역 참여 중소·중견기업(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협·단체 등 비영리 법인
지원내용	수입규제 기본·심화 컨설팅, 산업피해 컨설팅 철강·알루미늄 등 美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응 컨설팅 ※ 컨설팅은 별도의 업체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컨설팅 유형

1.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대응

구분	컨설팅 대상	종류	지원금액
수입규제	1. 국제무역 참여 중소·중견기업	기본 컨설팅	250만원/건
	2. 국내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심화 컨설팅	최대 6,000만원/건
산업피해	국내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산업피해 컨설팅	최대 5,000만원/건
자문 및 상담	간단한 질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을 통한 별도 상담 가능(유선 상담 등)		10만원/건 * 30분 이내 진행

* 컨설팅으로 인한 수행기관의 법적 책임은 없음

II. 美 232조 등 新유형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종류	세부 내용		지원금액
기본 컨설팅	주요국 신규 수입규제 조치 개요 설명, 기업별 생산 제품의 규제 적용 대상 여부 사전 검토		100만원/건
심화 컨설팅	심화 ①	철·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해당 여부, 철·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산정	250만원/건
	심화 ②	비특혜원산지 판정 및 세번(HS코드) 검토	500만원/건
의견서 작성	의견서 첨삭	조사당국 제출용 의견서 내용 검토 및 보완	500만원/건
	의견서 작성대행	조사당국 제출용 의견서 작성 관련 전반적인 절차 대행	750만원/건

* 의견서 작성대행의 경우, 의견서는 업체·협회명으로 제출되며, 컨설팅으로 인한 수행기관의 법적 책임은 없음

III.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중소·중견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및 협·단체
美 232조 등 新유형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 중소·중견기업 구분은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PGUM0001.do)
산업피해 컨설팅	국내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신청·지원 절차

지원 절차 컨설팅 신청 ▶ 검토 및 선정 ▶ 수행기관 배정 ▶ 컨설팅 진행

지원기업 선정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 우선 선정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보내실 곳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Tel : 02-6050-3683/3369 E-mail : trade@korcham.net

글로벌 통상애로 관련 무역장벽 119

비즈니스 애로 실시간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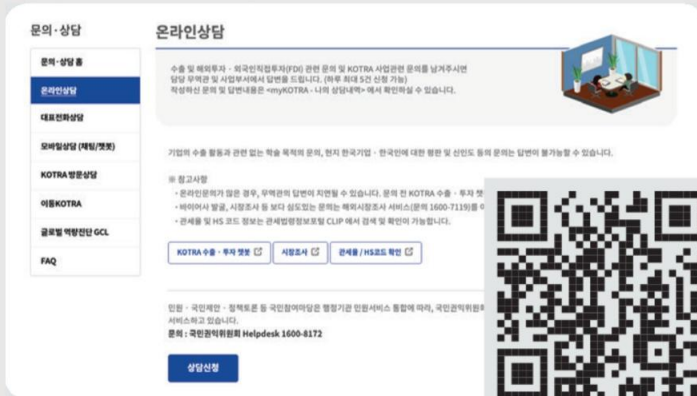


통합상담창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물품의 관세율, 대체시장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사업, 해외인증정보 등 중소·중견기업의 관세 및 비관세 애로 상담

이용 방법:

- 온라인 www.kotra.or.kr



웹사이트 상단 문의/상담 >
좌측 온라인 상담 >
중간 하단 상담신청

* 접수 후 48시간 내 답변
(회원 이메일로 알림)

이용 방법: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앱 메인 화면 > 돋보기 아이콘 클릭 >
"KOTRA" 검색 > 채널 추가 후 1:1 상담 진행
* 월-금 0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카카오톡 바로가기

- 전화: 1600-7119 > 키패드 2번 터치(해외진출 및 인증 상담)
수출전문위원 상담 → 해외무역관 확인 OR TBT종합지원센터 자문
* 월-금 0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지원 사업

-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심층 컨설팅
- 해외규격인증 심층 컨설팅

미국 수출제품에 부과되는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강제노동 과잉생산 관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MTI코드 연계)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 신청 대행, 과세가격 검토,
HS CODE 분류 검토, 원산지 판정,
美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 대응,
IEEPA 관세 환급대상 검토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
인증을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
검토 및 절차 등을 지원

